

## 『마이홈플랜 주택청약종합저축』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,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약관, 거치식예금약관, 적립식예금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 단,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### 1. 개요 및 특징

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.

다만 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 [별표 2] 에 따른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 할 수 있습니다.

### 2. 이자에 관한 사항

#### 적용이율(2017.9.15 일 현재, 세전)

-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가입일로부터 1 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.

1. 가입일로부터 1 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: 연 1.0%
2. 가입일로부터 1 년 이상 2 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: 연 1.5%
3. 가입일로부터 2 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해지하는 경우 : 연 1.8%

-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, 금리 변경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 후 금리적용

#### 이자지급 시기·방법

- 주택청약종합저축 원금 및 이자는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. (중도인출 불가)

#### 이자 계산방식

- 단리식

### 3.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

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,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

### 4.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

#### 만기/중도해지방법/절차

- 영업점 방문 신청(또는 고객센터 가입하신 비대면 채널(인터넷뱅킹)을 통하여 신청·해지 가능)

#### 중도해지

-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별도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저축기간에 따라 약정이율을 적용
-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

#### 중도해지수수료

- 해당 사항 없음

5.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

□ 가입자격

- 누구든지 가입가능
- 국민인 개인(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)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 없이 가입가능

□ 가입제한

-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 계좌에 한한다.
- 주택청약종합저축은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중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5 조의 7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저축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.

□ 가입금액

- 매월 약정납입일(가입 응당일)에 2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. 다만, 납입잔액이 1,500 만원 미만인 경우 1,500 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하고, 납입잔액이 1,500 만원 이상인 경우 회차당 50 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

6. 은행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

□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

- 국민주택 청약금 납입시 1 회 납입 금액은 10 만원만 인정되고,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.
-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지역별 1 순위 인정 납입 회차에 충족되어야만 1 순위 자격이 발생하므로 **입금시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**
- 월저축금을 연체 및 선납한 계좌는 『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』에서 정한 다음 산식에 따라 **납입 인정일 및 순위 발생일이 지연**될 수 있으며, 순차 횟수를 초과하여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$$[\text{회차별 납입인정일} = \text{약정납입일} + (\text{연체총일수} - \text{선납총일수}) / \text{납입횟수}]$$

- **선납은 24 회차**까지 가능하지만 **청약 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(납입 인정일)에 도달 하여야** 발생합니다
- 국민주택 청약(일반공급)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납입인정된 회차의 저축총액 또는 납입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입주자 선정하므로, 순위발생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납입하는 것이 입주자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.

[순위인정 요건]

순위	순위별 요건	
1순위	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	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
	수도권	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
	수도권 외의 지역	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(다만, 시.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)
	위축지역	주택청약종합통장에 가입하여 1개월이 경과된 자

2순위	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(청약통장 가입자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□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

[순위인정 요건]

순위별	순위별 요건	
1순위	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	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한 자
	수도권	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한 자
	수도권 외의 지역	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한 자 (단,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)
	위축지역	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한 자
2순위	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(청약통장 가입자)	

※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(청약과열지구)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

- 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(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한다),
- ② 세대주가 아닌자, ③ 2주택이상 보유자 (토지임대주택의 경우 1주택이상 보유자)는 1순위 제외한다.

[참고]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[별표2])

(단위 : 만원)

주택형별 지역별	전용면적			
	85㎡이하	102㎡ 이하	135㎡ 이하	모든면적
서울·부산	300	600	1,000	1,500
기타 광역시	250	400	700	1,000
기타 시·군	200	300	400	500

□ 기타 유의사항

-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.  
(단,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)
- **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**는 국민주택(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) 및 민영주택 중 투기과열지구내 또는 조정대상지역(청약과열지역)의 주택에 **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청약이 불가합니다.**
- **가점제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청약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.**  
(2017.9.25 일 이후 당첨자부터 적용. 지역무관, 모든 주택 해당)
- 만 19세 이전 납입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시 **24 회차만(금액이 큰 순서대로) 인정되고**, 민영주택 청약 시는 입금금액 전액을 인정하며, 청약 가점제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.
- 주택 **청약권은 만 19세 이상**에게만 부여되므로 만 19세 미만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갖추어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.(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세대주 제외)
- 청약 금액의 **일부 인출은 불가능**하며, 필요시 본인 명의 대출에 담보 제공가능 합니다.

- 가입자 정보(성명, 전화번호, 생년월일 등)는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(청년우대형 포함)가입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활용 등의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업무위탁기관(국토교통부, 주택도시보증공사)

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.

### 7. 기타 계약의 주요내용

명의변경

-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변경 가능
  - ⇒ 가입자 사망의 경우(가입자가 개명한 경우에도 청약통장 명의 변경가능)

비과세종합저축

- 한도내에서 가능 (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)

소득공제

- 대 상 자 : 총급여 7,000 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세대주
- 한 도 : 연간 납입금액(연간 240 만원 한도 범위내)의 40%(한도 96 만원)
  - ※2014.12.31 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7 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2017 년도분까지 연간 납입액의 최고 120 만원의 40%한도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가능
- 조 건 :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 월말까지 가입은행에 "무주택확인서"를 제출한 자 (자격상실 또는 소득공제 해제를 원할 경우 가입은행에 내점하여 해지등록)
- 추징대상 :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로 ① 또는 ②에 해당 할 경우 계좌해지시 추징
  - ①가입일로부터 5 년이내 해지시(예외사항 :사망,해외이주,85 m<sup>2</sup>이하 주택 당첨해지 등)
  - ②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 m<sup>2</sup>)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(기간 제한 없음)
- 추징금액 :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납입한 금액(연 240 만원 한도)의 누계액의 6%(지방소득세 별도)를 곱하여 추징

※ 관련 법률 개정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양도 및 질권설정

- 사망에 의한 상속 이외에는 양도 불가, 본인 명의의 당행 대출을 위한 질권설정은 가능하나, 타행대출 및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명은 불가

분할해지

- 불가

### 8.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자세한 상품문의는 고객센터 1577-8000 (서비스코드 : 예금상담 641, 대출상담 642, 외환상담 643)로 연락바랍니다.

상품가입 후,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센터(080-023-0182),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shinhan.com)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